

##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제 안 자 : 구교강의원 외 6인

2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2조 및 제30조와 「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,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과 성주군 조직개편(안)에 따른 의정팀 신설과 담당에서 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성주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 당연직 간사 명칭 변경(안 제6조 2항)  
- “의사담당” → “의정팀장”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 
「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

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 개정과 성주군 조직개편(안)에 따른 의정팀 신설로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
  
- 주요 내용은 의정팀 신설과 담당에서 팀장으로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성주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 당연직 간사 명칭을 의사담당에서 의정팀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.
  
- 법리 검토 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성주군 조직개편(안)에 따른 변경 내용을 신속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것으로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